

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,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 일괄신고서	① 환매수수료 삭제 ② 종류형 수익증권 신설 (C-Pe, C-P2 C-P2e) ③ 단기대출, 금융기관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 관련 투자비율 적용예외 사항 보완 ④ 모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(신영장기증권모투자신탁→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)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18년 5월 11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**집합투자규약**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~ ② <생략>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1. <생략> 12~14. <신설>	① ~ ② <생략>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1. <생략> 12. <u>종류 C-Pe 수익증권</u>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3. <u>종류C-P2 수익증권</u>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4. <u>종류C-P2e 수익증권</u>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
	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	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

	<p>같다.</p> <p><u>신영장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	<p>같다.</p> <p><u>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1. <생략></p> <p>12~14. <신설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1. <생략></p> <p>12. 종류 C-Pe 수익증권</p> <p>13. 종류 C-P2 수익증권</p> <p>14. 종류 C-P2e 수익증권</p>
제18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2.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</p> <p><보완>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2.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제39조 (보수)	<p>① ~ ② <생략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1. <생략></p> <p>12~14. <신설></p>	<p>① ~ ② <생략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1. <생략></p> <p>12. 종류 C-Pe 수익증권</p> <p>가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54</p> <p>나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4.75</p> <p>다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2</p> <p>라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</p> <p>13. 종류 C-P2 수익증권</p> <p>가.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54</p> <p>나.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80</p> <p>다.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2</p> <p>라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.1</p>

		<p>14. 종류 C-P2e 수익증권 <u>가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54</u> <u>나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0</u> <u>다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2</u> <u>라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1</u></p>
제40조(판매수수료)	<p>1.~11. <생략> <u>12~14. <신설></u></p>	<p>1.~11. <생략> 12. 종류 C-Pe 수익증권 : 없음 13. 종류 C-P2 수익증권 : 없음 13. 종류 C-P2e 수익증권 : 없음</p>
제41조(환매수수료)	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 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"이익금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 <u>종류 A, Ae, C1,C2, C3, C4, Ce, Ci, Cw, S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<u>90일 이상 1년 미만 : 이익금의 50%</u> <u>1년 이상 3년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 <u>종류 Cp 수익증권 : 환매 수수료 없음</u></p>	<p><u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
부칙	<신설>	<p>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, 적용한다.</p>

◆ **일괄신고서 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**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	모투자신탁의 명칭변경 <u>신영장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	모투자신탁의 명칭변경 <u>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
요약	제1부 효력발생예정 변경	제1부 효력발생예정: 2018년 5월 11일
	제1부 <u>환매수수료 :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· 90일 이상 1년 미만 : 이익금의 50% · 1년 이상 3년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	제1부 <u>환매수수료 : 없음</u>
본문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
<p><추가></p>	<p>C-Pe : C9232 C-P2 : C9233 C-P2e : C9234</p>
<p>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추가></p>	<p>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-Pe : C9232 C-P2 : C9233 C-P2e : C9234</p>
<p>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<추가></p>	<p>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C-Pe: 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C-P2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C-P2e: 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<p>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단기대출, 금융기관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 <투자비용 적용예외> - 단기대출, 금융기관예의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<u>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단기대출, 금융기관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 <투자비용 적용예외> - 단기대출, 금융기관예의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<u>다만,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<추가></p>	<p>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C-Pe : <u>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C-P2 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</u></p>

		<p>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C-P2e :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
<p>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나. 환매</p> <p>(3) 환매수수료 :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,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.</p> <p>C-P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그 외 클래스 :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/ 90일 이상 1년 미만 : 이익금의 50% / 1년 이상 3년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		<p>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<p>나. 환매</p> <p>(3) 환매수수료 :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</p>
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생략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추가></p>	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C-Pe, C_P2, C-P2e</p> <p>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</p> <p>환매수수료 : 없음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C-Pe :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540 판매회사보수율 : 0.475 신탁업자보수율 : 0.020 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0 총보수 : 1.045</p> <p>C-P2 :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540 판매회사보수율 : 0.800 신탁업자보수율 : 0.020 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0 총보수 : 1.370</p> <p>C-P2e :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540 판매회사보수율 : 0.400 신탁업자보수율 : 0.020 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0 총보수 : 0.970</p>